

배움과 사랑으로 큰 꿈을 열어나가는 시화나래교육

---

# 2023학년도 학교교육 설명회 자료집

---

시 화 나 래 초 등 학 교

# 차 례

1. 학교 현황 .....	1
2. 2023학년도 교육활동 계획 .....	2

## 학부모 연수 자료

1.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불법찬조금 근절 .....	1
2.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 금지 .....	3
3. 출결 및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안내 .....	5
4. 교육활동보호 안내 .....	6
5. 학생성장중심평가 .....	8
6. 학교폭력 예방교육 .....	10
7. 아동학대 예방교육 .....	12
8. 학생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	16
9. 학생 인권교육 .....	19
10. 안전한 등하교 지도 및 실종 유괴 예방교육 .....	20
11. 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	22
12.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24
13.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	25
14. 개인정보보호 .....	29
15. 학부모안전교육 .....	31
16. 인성교육 .....	35
17. 학생봉사활동 .....	36
18.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안내 .....	37

# 1. 학교 현황

## 가 일반 현황

SCAN ME



- 1 학교명 : 시화나래초등학교
- 2 소재지 : 경기 시흥시 거북섬남로 70
- 3 홈페이지 : <http://narae2023.es.kr>
- 4 대표 전화번호 : 031-364-3410
  - ▶ 교무실 : 031-364-3410 ▶ 행정실 : 031-364-3406 ▶ FAX : 031-8042-7290

총부지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규모
30,943m <sup>2</sup>	6,989.35m <sup>2</sup>	10,303.9m <sup>2</sup>	지상 4층 일반교실 33학급 특수 2학급

## 나 학교 연혁

날 짜	연 혁
2023. 03. 01.	시화나래초등학교 개교(초등학교23학급, 특수1 학급)
	초대 이수근 교장 취임
2023. 03. 23.	학급 증설 : 특수 1학급(추진 중)

## 다 학생 현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특수
		4학급	4학급	4학급	4학급	4학급	3학급	23학급
학생수	83	85	54	52	59	41	374	9

## 라 교직원 현황

구분	교 장	교 감	학급교사	교과전담	보건교사	사서교사	특수교사	행정실장	주무관	행정실무사	특별전담사	계
인원	1	1	23	4	1	1 (0)	1 (+1)	1	4	3	3	44

## 2. 2023학년도 교육활동 계획

### 가 시정표

1-2학년		3-4학년		5-6학년	
08:40 ~ 09:00 등교 및 나침반 안전교육					
1교시	09:00~09:40	1교시	09:00~09:40	1교시	09:00~09:40
2교시	09:50~10:30	2교시	09:50~10:30	2교시	09:50~10:30
3교시	10:40~11:20	3교시	10:40~11:20	3교시	10:40~11:20
4교시	11:30~12:10	점심시간	11:20~12:10	4교시	11:30~12:10
점심시간	12:10~13:00	4교시	12:10~12:50	점심시간	12:10~13:00
5교시	13:00~13:40	5교시	13:00~13:40	5교시	13:00~13:40
		6교시	13:40~14:20	6교시	13:40~14:20

### 나 학년별 주간 시수 운영계획

요일 학년	월	화	수	목	금	주당시수계
1학년	5	5	4	5	4	23
2학년	5	5	5	5	4	24
3학년	5	6	5	6	5(4)	27
4학년	5	6	5	6	5(4)	27
5학년	6	6	5	6	6	29
6학년	6	6	5	6	6	29

**나**

**연간 학사 일정**

2023학년도 1학기

시화나래초등학교

월	주	일자	수업일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공휴일 및 주요 교육 활동	월수업 일수계
3	1	1-4	2				1	2	3	4	★ 삼일절(1일) ◎ 시업식·입학식	3월 수업 일수 [22일]
	2	5-11	5	5	6	7	8	9	10	11	◎ 진단활동주간(6일~10일)	
	3	12-18	5	12	13	14	15	16	17	18		
	4	19-25	5	19	20	21	22	23	24	25	◎ 학부모총회 및 학교교육계획 설명회(24일)	
	5	26-31	5	26	27	28	29	30	31			
4	6	1	0							1		4월 수업 일수 [20일]
	7	2-8	5	2	3	4	5	6	7	8		
	8	9-15	5	9	10	11	12	13	14	15	◎ 1학기 학부모상담주간(10일~14일) ◎ 학교안전주간(10일~14일) ◎ 2, 3, 5, 6 신체발달, 시력검사(10일~14일)	
	9	16-22	5	16	17	18	19	20	21	22	◎ 장애인식개선주간(17일~21일) ◎ 친구사랑교육주간(17일~21일) ◎ 학교폭력예방교육 (18일)	
	10	23-29	5	23	24	25	26	27	28	29	◎ 1, 4학년 출장 건강검진(28일)	
5	11	30-6	4	30	1	2	3	4	5	6	◎ 스포츠클럽운영주간(5월 1일~4일) ★ 어린이날(5일)	5월 수업 일수 [21일]
	12	7-13	5	7	8	9	10	11	12	13	◎ 정보통신윤리교육주간(5월 8일~12일)	
	13	14-20	5	14	15	16	17	18	19	20	◎ 합동소방훈련(15일)	
	14	21-27	5	21	22	23	24	25	26	27	★ 석가탄신일(27일)	
	15	28-31	2	28	29	30	31				◎ 5-6학년 팝스검사주간(30일~ )	
6	16	1-3	2					1	2	3		6월 수업 일수 [20일]
	17	4-10	3	4	5	6	7	8	9	10	★ 학교장재량휴업일(6월 5일) ★ 현충일(6일) ◎ 호국보훈주간(7일~9일)	
	18	11-17	5	11	12	13	14	15	16	17	◎ 학생인권주간(12일~16일)	
	19	18-24	5	18	19	20	21	22	23	24	◎ 통일교육주간(19일~23일)	
	20	25-30	5	25	26	27	28	29	30			
7	21	1	0							1		7월 수업 일수 [15일]
	22	2-8	5	2	3	4	5	6	7	8		
	23	9-15	5	9	10	11	12	13	14	15	◎ 2학기 전교임원선거(13일)	
	24	16-21	5	16	17	18	19	20	21	22	◎ 여름방학식(21일, 1~6학년 창체③) ※ 4교시 수업(급식X)	
1학기			98	※ 2023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 98일								
비고			※ 여름방학식 : 2023.7.21.(금) ※ 개학식 2023.8.16.(수) ※ 여름 방학 : 2023.7.22.(토) ~ 2023.8.15.(화) (25일간)									

2023학년도 2학기

시화나래초등학교

월	주	일자	수업 일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공휴일 및 주요 교육 활동	월 수업일 수계	
8	1	13-19	3	13	14	15	16	17	18	19	★ 광복절(15일) ◎ 개학식(16일) ※ 4교시 수업	8월 수업 일수 [12일]	
	2	20-26	5	20	21	22	23	24	25	26	◎ 학급임원선출(8월 23일, 3~6학년)		
	3	27-31	4	27	28	29	30	31					
9	4	1-2	1						1	2		9월 수업 일수 [19일]	
	5	3-9	5	3	4	5	6	7	8	9			
	6	10-16	5	10	11	12	13	14	15	16	◎ 학부모공개수업(13일) ◎ 정보통신윤리교육주간(11일~15일) ◎ 2학기 학부모상담주간(18일~22일)		
	7	17-23	5	17	18	19	20	21	22	23	◎ 2학기 학부모상담주간(18일~22일)		
10	8	24-30	3	24	25	26	27	28	29	30	★ 추석연휴(28일~30일)	10월 수업 일수 [19일]	
	9	1-7	3	1	2	3	4	5	6	7	★ 학교장재량휴업일(10월 2일) ★ 개천절(3일) ★ 한글날(9일)		
	10	8-14	4	8	9	10	11	12	13	14	◎ 장애이해교육주간(10일~20일) ◎ 현장체험학습(1~20일) 중 추진 예정		
	12	22-28	5	22	23	24	25	26	27	28	◎ 독도사랑교육주간(23일~31일) ◎ 친구사랑교육주간(23일~31일)-애플데이(23일) ◎ 자체소방훈련(26일)		
	13	29-31	2	29	30	31							
11	14	1-4	3				1	2	3	4		11월 수업 일수 [22일]	
	15	5-11	5	5	6	7	8	9	10	11	◎ 재난대비훈련 (8일)		
	16	12-18	5	12	13	14	15	16	17	18			
	17	19-25	5	19	20	21	22	23	24	25	◎ 진로체험주간(20일~24일) ◎ 교육과정발표회(24일)		
12	18	26-30	4	26	27	28	29	30				12월 수업 일수 [20일]	
	19	1-2	1						1	2			
	20	3-9	5	3	4	5	6	7	8	9	◎ 2학기 교육공동체 대토론회(6일)		
	21	10-16	5	10	11	12	13	14	15	16	◎ 2024 전교임원선거(14일)		
	22	17-23	5	17	18	19	20	21	22	23			
	23	24-30	4	24	25	26	27	28	29	30	★ 성탄절(25일) ◎ 겨울방학식(30일) ◎ 신입생 예비소집일(27일~28일) ◎ 종업식 / 졸업식(29일) ※ 1~5학년 2교시 수업, 6학년 4교시 수업(급식)		
2학기			92	※ 2023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 92일									
비고			※ 2학기 시작 : 2023.8.16.(수) ※ 겨울(학년말) 방학식 : 2023.12.29.(금) ※ 겨울(학년말) 방학 : 2023.12.30.(토) ~ 2024.2.29.(목) (62일간)										

학 년	학 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수업 일수	1	98	98	98	98	98	98
	2	92	92	92	92	92	92
	총계	190	190	190	190	190	190

#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불법찬조금 근절

## 1 청탁금지법의 이해

▶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 적용대상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① 공직자 등(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② 공직자 등의 배우자, ③ 각종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의 학부모위원을 포함한 민간위원, ④ 부정청탁 및 금품등을 제공한 일반 국민입니다.

### ◆ 주요내용

(부정청탁 금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없습니다. \*예)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금품등 수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사교·의례·부조의 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워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제공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벌칙 등) ①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와 ②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자에게 벌칙(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 ◆ 위반사례

- 스승의 날에 학생(학부모)이 선생님(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께 선물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선생님의 결혼식에 학생(학부모)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학부모님이 선생님과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교감 선생님께 선물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 허용사례

-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카네이션(꽃)을 드리는 것은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입니다.
-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금품 등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학교의 선생님과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이 허용됩니다.(동생이 이전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불가능)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http://www.epeople.go.kr) (민원신청) 또는 청렴포털 : [www.clean.go.kr](http://www.clean.go.kr) (신고하기)

▶ 우리학교에서는 **적법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불법찬조금도 받지 않습니다.**

학부모님께서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교직에 대한 금지와 보람을 가지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법찬조금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합니다.**

## 3 불법찬조금 유형 및 사례

- 각 학급별 대표 학부모들이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한 찬조금품을 학예발표회, 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입학·졸업식 등 각종 행사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
-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가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여 야간자율 학습지도, 교직원 선물, 교직원 회식 등의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
- 학생간부 어머니 또는 어머니회(자모회 등)등이 학교 기자재 및 교재·교구 확충, 교실물품 구입, 시설비 확보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지원하는 사례
- 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의 교육활동 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각종경비를 부담하는 사례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차량운영비,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집행 (지도자 인건비, 수당 등 교직원 관련 비용은 조성 불가)
- 학부모회에서 일인당 회비를 모금하여 찬조금을 조성하였고, 이를 별도계좌로 관리하면서 학생 도시락 및 간식을 제공한 사례
- 학교(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회 조성 장학금을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하지 않고, 학부모회장 개인명의 별도계좌에 모금하였으며, 학부모회장이 직접 지급 또는 입금하는 방식으로 장학금을 집행한 사례
-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4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신고센터 → 신고센터 → 감사분야신고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 금지

## 1 공교육정상화법

◆ **공교육정상화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 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법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2014. 3. 11. 제정, 2019. 3. 26. 일부개정

### ◆ 「공교육정상화법」 주요 내용

-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학교 시험(지필, 수행평가)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을 배운 내용에서 출제
-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행정지도)

### ◆ 선행교육 판단 기준

구		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평가	재학생	교과 평가 (지필·수행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 대회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 2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Q&A

###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학기를 넘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도계획표를 수정하고 정보공시를 해야 합니다.

◆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교육기부로 운영되는 교과(관련) 프로그램도 선행교육의 규제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기부는 교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등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교육기부: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자원봉사, 개인재능, 시설·기자재 기부, 활동 지원, 콘텐츠 제공, 프로그램 운영)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부 유형.

◆ 교과 관련 교내 대회에서도 정규 교과 교육과정의 범위를 앞선 문항을 출제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교과 평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학기를 단위로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입학 이전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이후에 다루어야 할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해도 되나요?

입학예정학생에 대하여 입학 전에 상급 학교(입학예정학교)의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 초6과 중1, 중3과 고1을 연계한 영어, 수학, 논술 등의 교과 프로그램(캠프 등 활용 포함) 운영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교육과정을 앞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 초등학교 1, 2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영어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외의 활동에 해당되므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 교과를 운영하는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학년 단계에 맞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하면서 영어를 활용한 음악활동(chant나 song) 및 국제 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관련 체험활동 등을 선행교육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 출결 및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안내

### 1. 학생 전출 절차

<b>전출 절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가족 이주로 인해 전학할 경우 담임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li> <li>- 행정실에 들러 우유급식비 환급 또는 납부 등의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li> <li>- 전출 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접수증을 교부 받고 해당 학교에 제출합니다.</li> <li>- 전입학 관계 서류는 학교 끼리 연락하여 전산으로 처리합니다.</li> </ul>
--------------	--

### 2. 경조사별 출석인정 일수

구분	대상	일수	비 고
결혼	-형제, 자매	1일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휴무도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에 산입하지 않는다.
입양	-본인	20일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일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1일	

###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7일전, 최소3일전)-> 결재(학교장 허가) -> 허가 통보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7일 이내) -> 출석인정 처리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의 체험학습 계획에는 학습목적이 드러나게 자세하게 작성합니다.</li> <li>- 체험학습이 끝나면 보고서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합니다.</li> </ul>
출석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인한 본교 교외체험학습의 허가기간을 57일에서 20일로 하향하며 이후는 결석처리[교외체험학습 20일]</li> <li>- 반일운영 가능 (교외체험학습으로 참여하지 못한 수업시수가 4시간 미만인 경우)</li> </ul>

(※신청서, 보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신청서 양식탭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4. 법정 감염병 감염시 출석인정

<p>법정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전화로 먼저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시고, <b>의사의 진료확인서나 진료소견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결석처리를 하지 않습니다.</b> 감염병에 걸린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등교중지를 시킵니다.</p> <p>▶ 감염병 아동 등교중지 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정에서 발생시→ 유선으로 연락→치료 후 의사의 완치 진단 후→등교함 (등교 시 진료확인서나 진료소견서를 학교에 제출)</li> <li>2. 학교에서 발생시→ 감염병 의심아동이 학교에 등교 시→보건교사 면담 후 의심아동 하교시킴 →감염병으로 의사 진단 후 학교로 유선 연락→치료 후 의사의 완치 진단 후→등교함 (등교 시 진료확인서나 진료소견서 제출)</li> </ol>
--

### 5. 결석신고서 작성 안내 - 홈페이지에 제출 서류 등 자세히 안내됨

천재지변에 의해 등교하지 못할 경우와 위 3,4번의 이외의 결석 시(질병, 개인사정) 결석 후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과정	결석 사유 발생 -> 결석계 작성, 담임교사에게 제출 -> 담임확인 -> 학교장 확인 -> 출결처리

(※결석신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보호 안내

## 1 교육활동보호의 이유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교육에 대한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합니다. 따라서 선량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장과 상호신뢰가 필요합니다.

나. 학생들의 인성에 위협: 민주시민의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모습은 교육환경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학년 학생일 경우 교원은 학교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학부모와 교원 간의 분쟁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 수업활동과 안전을 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육활동 중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교원과 학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6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예]**

1. 폭행상해: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경우
2. 협박: 교원에게 '교직을 그만두게 만든다', '죽여버린다' 라고 말한 경우
3. 명예훼손: 다른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교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4. 모욕: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수업태도를 바르게 하라는 교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올려 보인 경우
5. 손괴: 수업 중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는 경우
6. 성범죄: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7. 불법정보 유통: 핸드폰 문자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또는 분쟁조정
- 2) 침해 학생 조치 내용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 정도, 피해 교원의 임신·장애 여부, 침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 의결

-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처분(의무교육대상자 미적용)

※ 위 조치 중 ③호 특별교육은 학부모도 함께 참여해야 함(미참여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가. 가정교육의 중요성 인식하기: 가정교육은 학교교육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정교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학교교육이 위협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성교육이나 생활습관 개선, 관계성 교육 등은 가정교육을 통해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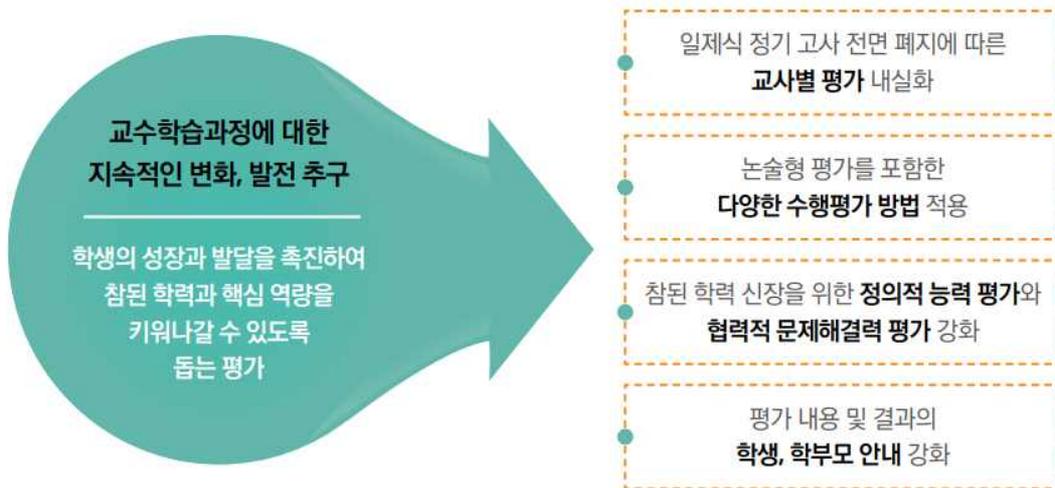
나. 교원과 학부모의 관계 재정립하기: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과 학교를 신뢰할수록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다.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다음의 사항을 꼭 유의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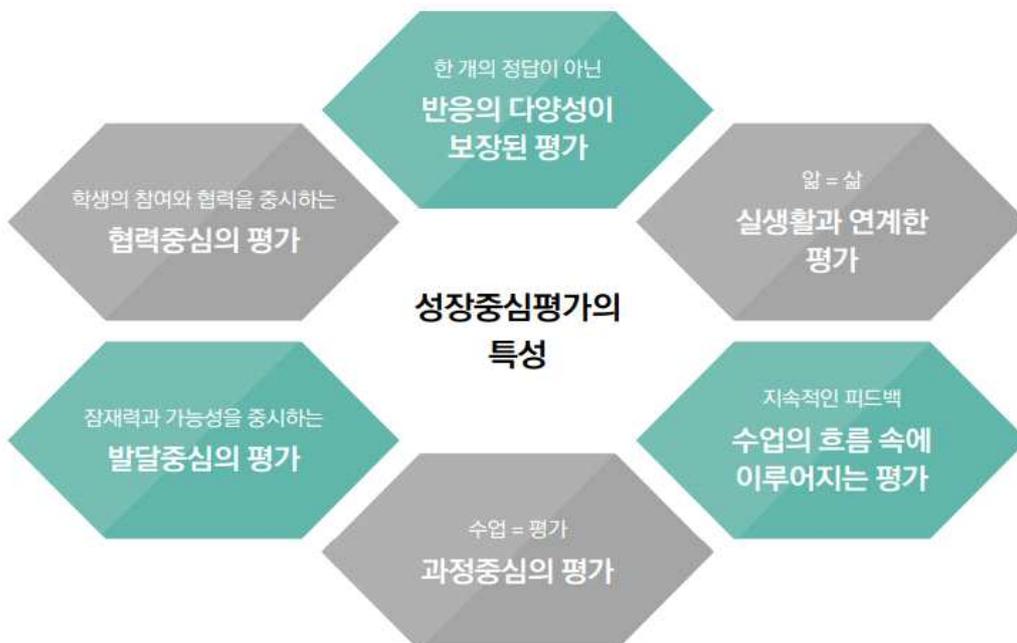
- 선생님과의 연락은 근무시간에 학교 전화로 해 주세요. 사전에 면담시간을 정하면 더욱 좋습니다.
-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사적인 연락, 밤 늦은 시간 단순 민원, 학교 밖 상담 요구 등을 피해주세요.
- SNS에 선생님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 모바일 메신저 등 온라인상에서 교원에 대한 욕설을 하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을 지도해 주세요.

## 학생 성장 중심 평가

### 1. 성장중심 평가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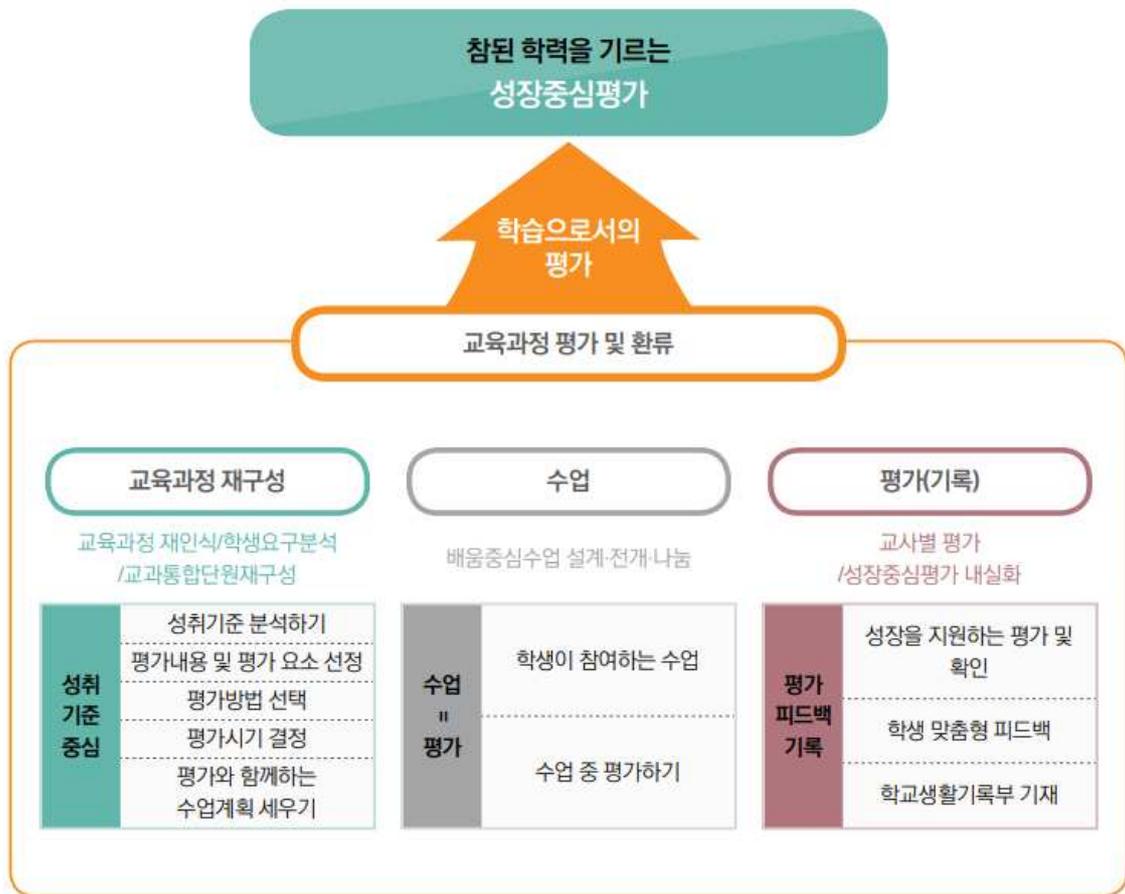
### 2. 성장중심 평가의 특성



### 성장중심평가는 어떻게 이행되어야 할까요?

성장중심평가는 학생들을 잘 세우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의 잠재성과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돕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탐구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과 성취한 결과를 포함하는 일련의 총체적 과정인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수업을 통해 이를 구현하며 수업 속에서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하여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의 평가권을 강화하고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교사별 평가를 실시합니다. **교사별 평가**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수업 중에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본질적인 목표인 적기의 피드백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방안입니다.



※ 각 학급별 1학기 성장중심평가계획(별도 안내-학교홈페이지)

# 학교폭력 예방교육

## 1 학교폭력의 개념

-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따돌림)** 학교 내외에서 두 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 2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 가. 내 자녀도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나.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 관계를 파악합니다.
- 다.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존중, 역지사지, 준법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 라. 자녀에게, 사소한 폭력이나 장난도 약자에게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교육합니다.
- 마. 자녀에게 모범적인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친구들이 학교폭력에 가담하고자 할 때, 잘못된 일임을 친구에게 알리도록 지도하고, 잘못된 친구의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친구 간의 의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 줍니다.

### 4 학교폭력 피해를 알았을 때 대처요령

- 가. 자녀가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 나. 폭력 피해가 우려되는 자녀에게는 동반자를 만들어 주고, 등하교 시 가급적 큰길을 이용하며 필요한 경우 부모님과 동행하도록 합니다.
- 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와 협의하여 공동지도 하도록 합니다.
- 라.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는 바로 부모님, 선생님께 알리도록 자녀에게 지도하며, 그것이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 마. 내 자녀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생활지도 및 태도 개선을 위해 힘씁니다.

### 5 학교폭력 신고 방법

#### 가. 교내 신고방법

- (직접 신고·상담)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거나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
- (설문조사)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 부여 및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 실시
- (LMS 시스템) LMS 시스템(하이클래스)를 통한 신고 등
-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의 사이버 상담 등

#### 나. 교외 신고방법

-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 국번 없이 117 및 117센터에 방문 신고·상담
- (경찰청)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범죄 신고 11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
- (학교전담경찰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 아동학대 예방교육

### 1 아동학대의 개념

가.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 제1조)

나.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아동학대범죄'란?(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의 각 목)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 (형법)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 추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 (아동복지법)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범

※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 행위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보다 좁은 개념(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내용

가.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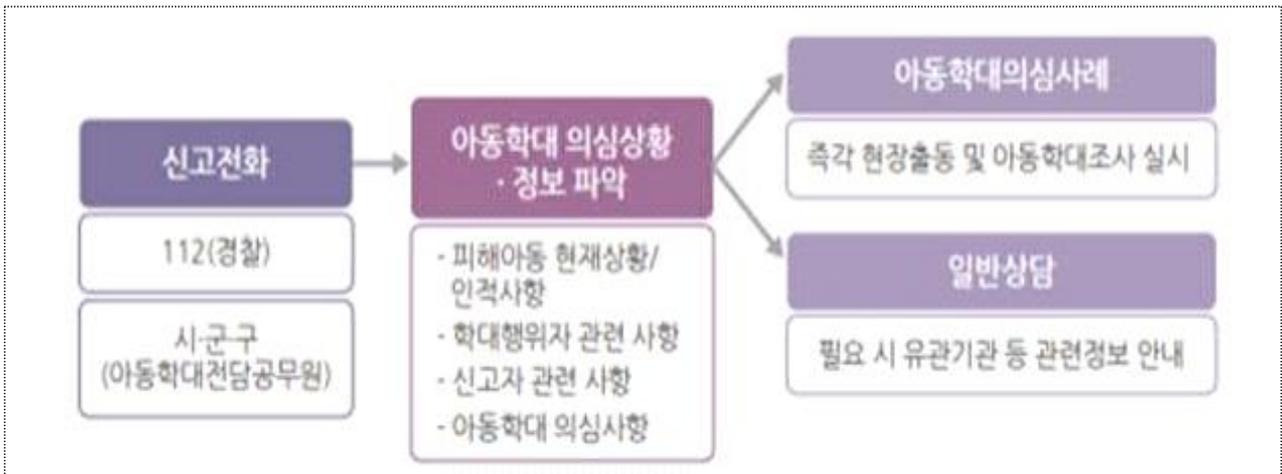
나.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다.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라. (방임 및 유기)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3 아동학대 신고

가. 아동학대 신고 및 조치 흐름도



나. 아동학대 신고자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다.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기관

- 국번 없이 112(전화, 문자)
- 시·도,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
- 모바일앱(아이지킴콜 앱)
- 보건복지 콜센터 129-6번(아동학대 상담)
- 아동보호전문기관

### 4 징계권 폐지 안내

가. 징계권이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민법 제915조)

나. 징계권 폐지 시기

2021년 1월 26일에 폐지되었습니다.

※ 아동은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 5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사자명예훼손, 모욕, 강\*, 강제추행, 준강\*,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 6 가정폭력의 유형 및 내용

<p>✓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손상을 가하는 행위, 목을 조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p>	<p>✓정서적 학대 무시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폭언하기, 물건을 파손, 때리게 만들었다며 폭력을 정당화하기 등</p>	<p>✓고립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 어디에 있는지 장소 추적하기, 모든 결정권 박탈하기, 하인처럼 취급하기 등</p>
<p>✓협박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 칼이나 흉기로 위협, 눈빛/행동/몸짓으로 협박, 물건파괴, 애완동물 학대, 무기 전시 등</p>	<p>✓때리는 것만이 가정폭력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지는 않았나요?</p>	
<p>✓남성적 특권 이용 배우자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본인 혼자하기 등</p>	<p>✓자녀 이용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때어놓겠다고 위협하기, 배우자를 학대하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p>	<p>✓배우자 비난 배우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p>
<p>✓경제적 학대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 처분하기, 생활비 지출을 보고 요구하기 등</p>	<p>✓원치 않는 성관계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하기,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 강요하기 등</p>	<p>✓방임 무관심, 위험 상황(병원에 가야할 일)에서 방치하기, 냉담한 태도 등</p>

## 7 가정폭력 신고 및 Q&A

**Q.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12나 1366에 신고하여 주소와 위급상황을 정확히 말해주세요. 당신의 실천이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어요.

**Q. 폭력이 경미해도 신고를 받아줄까요?**

A. 경미한 폭력도 폭력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어요. 출동한 경찰관에게 본인이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세요.

**Q. 이웃이 신고했다가 보복당하면 어찌죠?**

A. 신고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아요. 112가 부담스럽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 상담소로 연락해주세요.

**Q. 치료비, 법률지원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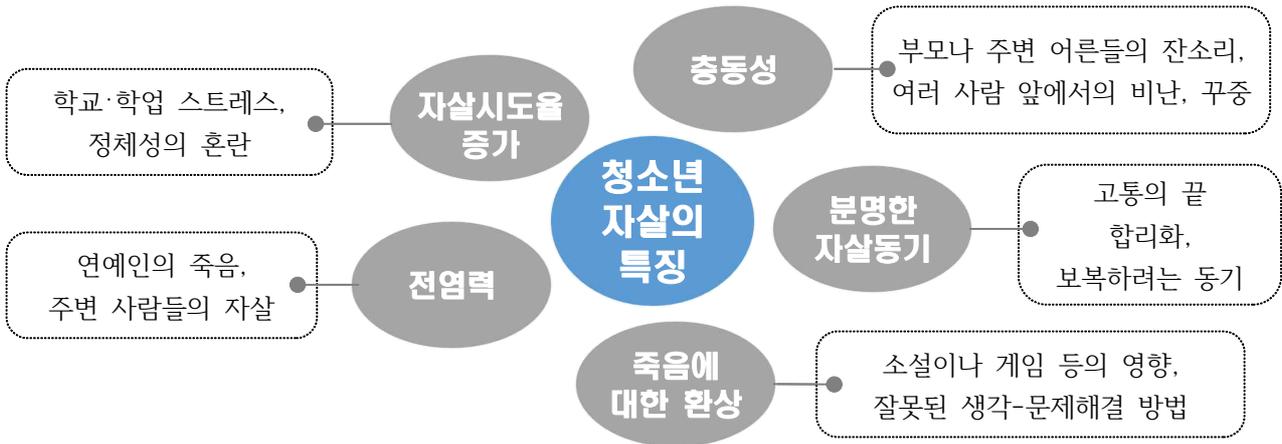
A. 가정폭력상담소 및 1366, One-stop 지원센터에서 연계지원 가능해요.

**Q. 아이를 데리고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 피해자가 원하면 상담을 통해 쉼터에 동반자녀와 함께 머무를 수 있어요. 단기 쉼터는 6개월, 장기 쉼터는 2년 이내, 임시보호는 최대 7일까지 머무를 수 있어요. 보호시설 퇴소 후 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심의를 거쳐 주거 공간(그룹홈)을 지원 받을 수도 있어요.

# 학생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 1 청소년 자살의 특징



## 2 청소년 자살 예고 징후

### 행동 신호

- 줄, 칼 등을 준비하고 감춤
- 수면, 진통제, 감기약 등을 모아서 감춰둠
-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나 선생님을 찾아감
- 일기장, 낙서, 블로그, SNS 등으로 자살, 죽음에 대해 표현
-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거나 의미 있는 소장품을 남에게 주거나 버림

### 언어 신호

- 나 정말 죽고 싶어
-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 멀리 떠나고 싶다
- 날아가 버리고 싶다
- 내가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 사라져 줄게
- 깨어나지 말았으면...
-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겠지?

### 기타 신호

-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 사람들과 만남을 끊고 혼자 지내려 함
- 식욕과 수면 습관의 변화
- 외모와 위생 상태에 대한 관심의 결여
- 성적이 떨어지거나 조퇴, 무단결석이 많아짐
- 위험한 행동이 증가함
- 흥미와 에너지의 저하
- 감정 기복이 심해짐

### 3 청소년 자살 방지를 위한 방법 및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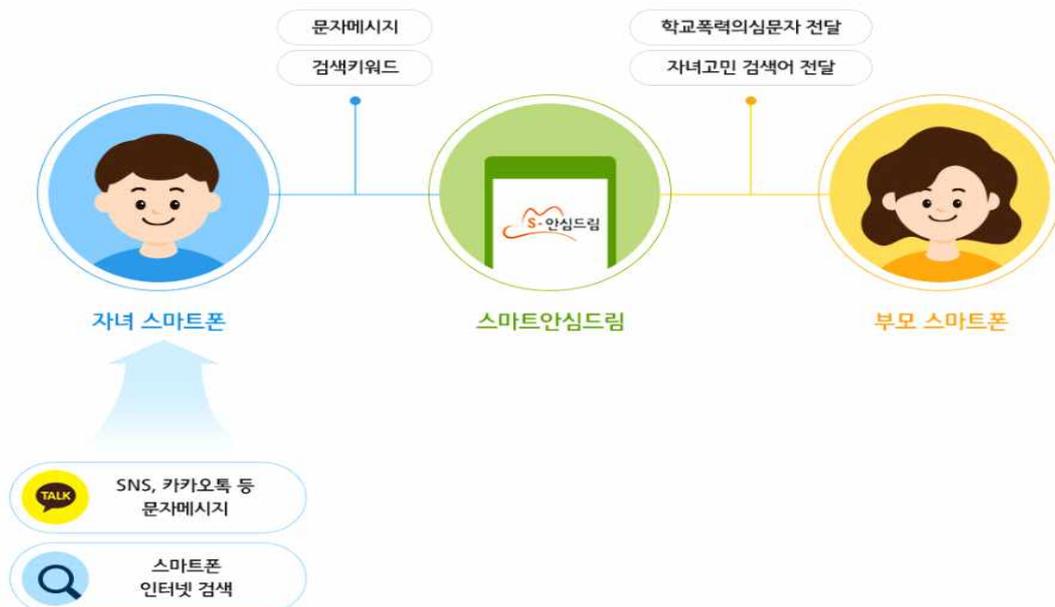
#### 가. 자살 예방 대처방법(가정)

- 자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자살에 대한 생각, 시도, 방법 등)
- 자살에 대한 생각과 삶을 지속할 이유 등 자녀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 논쟁이나 비판이나 충고, 설교, 조언은 하지 마세요.
- 부모님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세요.
- 말과 몸짓으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주세요.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이나 몸은 자녀를 향해 주세요.)
- 자녀의 감정을 공감해주세요.
- 자살 이외의 어려움을 해결할 여러 대안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 자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으세요.
- 곁에 머물러 주세요(자살은 충동적이므로 잠깐 고개를 돌린 순간에도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 도움을 요청하세요(자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나. 청소년 생명존중(자살예방) 7계명

- 진심어린 사랑으로 학생을 대한다.
- 학생의 장점과 강점을 부각시킨다.
- 학생과의 면담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
- 학생의 말을 잘 경청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한다.
- 학생지도 시 자존심 손상이나 인격적 모욕감이 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학생의 친구들에게 조력을 구한다.
- 자살 위험이 높은 경우 전문가나 기관에 의뢰한다.

#### 다. 자살징후 알리미 앱\*(스마트안심드림) 활용을 통한 학생의 자살징후 조기 인지



※ 설치 및 이용 방법

설치조건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서만 설치 이용 가능하며 통신사 구분 없이, 부모 명의 스마트폰을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 모두 설치 가능	
설치방법	부모 및 자녀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 T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스마트안심드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설치순서	<p>1단계: 부모님 스마트폰에 '스마트안심드림' 설치</p> <p>①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스마트안심드림' 실행</p> <p>② 모드 선택 시 보호자 선택</p> <p>③ 서비스 이용 동의</p> <p>④ 비밀번호 등록</p> <p>※ 로그인 비밀번호로 이용되니 반드시 기억</p> <p>⑤ 자녀 휴대폰 번호 입력(스마트폰 기기만 설치)</p>	
	<p>2단계: 자녀 스마트폰에 '스마트안심드림' 설치</p> <p>①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스마트안심드림' 실행</p> <p>② 모드 선택 시 자녀 모드 선택</p> <p>③ 서비스 이용 동의</p> <p>④ 기기관리자 설정 시 실행 클릭</p> <p>⑤ 접근성 설정 '서비스가 정상 작동 중입니다' 화면이 표시되면 동작 중</p> <p>⑥ 환경설정에서 설정 클릭 → 설치 완료</p>	
이용방법	스마트안심드림 로그인 후 '자녀폰 관리'에서 '자녀고민 검색어'를 클릭하여 자살 관련 수신메시지 및 검색어 확인	

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 ▷생명의 전화 (☎1588-9191, [www.lifeline.or.kr](http://www.lifeline.or.kr))
-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www.suicideprevention.or.kr](http://www.suicideprevention.or.kr))
-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번없이 1388, [www.kyci.or.kr](http://www.kyci.or.kr))
- ▷문자상담 「다 들어줄 개」 (☎1661-5004)

## 학생 인권 교육

### □ 학생인권보호 제도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학생의 인권은 다음과 같이 10개의 절로 구성

-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보호받을 권리
-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 학생인권의 개념

가. **학생자유권** : 학생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나. **학생복지권** : 학생이 아직 발달상 성숙에 이르지 못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어른으로부터 통제와 보호, 양육,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학생의 권리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 줄 책임은 부모와 국가에 있다고 봄

(교육에 대한 권리 / 건강권 / 안전권 /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 적법 절차를 누릴 권리 /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 권리를 지킬 권리)

다. **학생 평등권** : 자유권과 복지권을 성별, 장애, 용모, 종교, 피부색, 나이, 학업성적, 재산, 부모의 직업 등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가이드

- 차별받지 않을 권리(학생인권조례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학생인권조례 제6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학생인권조례 제8조, 제9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학생인권조례 제12조)

### □ 좋은 학교란?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학교 삶 안에서 인권의 가치가 생동하는 학교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 학교구성원의 일상생활 안에 뿌리를 내리는 학교이고, 그런 결과로 구성원의 삶의 실체가 높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함

\* 인권 친화적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함.

## 안전한 등·하교 지도 및 실종·유괴 예방 교육

### 1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교통안전 협조 사항

-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가용 등교를 자제하고, 교내 학부모님 차량 진입 금지
- 학교 앞 횡단보도 및 정문 앞에 차량 주정차 금지(어린이 보호구역)
- 정문 앞 횡단보도가 혼잡하므로 주변 교차로에서 하차 후 도보로 등교
- 각종 학원 차량의 교내 진입 및 학교 정문 앞 주정차 금지
- 학교 앞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 녹색어머니회 및 안전지킴이의 교통지도에 적극 협조
- 학생이 다쳐서 교내 차량 진입이 필요할 경우 행정실에서 출입 카드 발급
- 보호장구(헬멧, 손목·무릎 보호대) 미착용시 자전거 통학 금지

### 2 등하교 시 학부모 및 일반인의 교문 안 출입 안내

- 등굣길에 교문 앞까지만 동행(교문 밖에서 인사를 나누고 학생들만 들어가기)
- 하교 시 건물 밖에서 대기(교문 밖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
- 학생 통학용 차량 인솔자도 교문 밖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

### 3 학부모 및 외부인의 출입 강화 안내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도나 교실 등 건물 내부를 방문하여야 하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방문자 출입증을 받아 패용 후 출입
- 그 외 출입증을 착용하지 않은 학부모 및 일반인의 건물 안 출입 금지
- 일일방문증 발급 절차: 방문 목적 및 신분증 확인 → 방문관리대장 작성 → 방문증 수령 및 패용 → 학교 방문 → 퇴교 시 방문증 반납

※ 특수아동 보호자의 경우 상시 패용증 발급 예정

### 4 학교행사 참여로 학교 방문 시 협조 사항

- 교내주차장이 협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행사 당일 교내로 차량 출입 금지
-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도보로 이동

## 5 아동 실종·유괴 예방 교육

1.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 약속한 길로만 다녀요.
  - 등·하굣길에 있는 우범지역과 안전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아이에게 위험한 곳을 미리 알려주고, 통학 시 미리 약속한 안전한 길로만 다닐 수 있도록 이동경로를 정하기
2. 등·하굣길에는 친구들과 함께 다녀요.
  - 등·하굣길에 혼자 다니는 것보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하기.
3. 이름과 전화번호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자녀가 부모님의 이름과 연락처를 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본인과 가족의 개인 정보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도록 지도하기.
4.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님께 꼭 허락을 받아요.
  - 정상적인 어른은 어린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강조해 주세요. 또한 아는 사람이라도 부모님과 미리 얘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따라가지 않도록 강조하기.
5. 밖에 나갈 때는 누구랑 어디에 가는지 꼭 부모님께 이야기해요.
  - 평소에 밖으로 놀러 나갈 때에는 누구와 어디에 가는지 이야기하고, 언제 돌아올 것인지 등을 부모와 약속하는 습관을 들이기

## 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 1 성폭력 예방

가. 가정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방법

- 1) 신체의 구조와 차이 등 성에 대해 자녀와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합니다.
- 2)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 3)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만지려고 한다면 바로 교사나 부모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 4)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 5) 성폭력은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 6) '아는 사람' 이라도 조심하도록 합니다. (성폭력은 주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하고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도록 알려주세요

####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지키기 위한 방법】

-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고 상대방의 경계도 존중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자신의 경계를 넘어올 때 싫으면 '싫어.', '안 돼.'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다른 사람의 경계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허락)를 구해야 하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 수칙

- 1) 아동 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 성폭력 예방 안전수칙(7가지)
  -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립니다.
  -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2)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 성폭력 예방 안전수칙(7가지)
  - 아동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나눕니다.
  - 온라인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폭력 위험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반드시 알릴 것을 당부합니다.
  -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고 진심으로 지지해줍니다.
  - 아동·청소년의 피해사실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
  -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출처: 교육부 누리집 [카드뉴스]>

## 가. 양성평등이란?

평등한 부부란 남편과 아내가 성별 구분에 의해 역할분담이 되어지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돈벌이, 집안일, 육아, 의사결정을 분담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의 시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설거지나 아이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여성도 남성만큼 사회활동과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 나.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실천

- 1)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하십시오.
- 2)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3)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4) 진로, 학업 선택 시 남녀영역이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 5) 학업성취나 수행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보다 개인의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6) 어렸을 때부터 딸, 아들 모두 예술, 체육 등을 함께 즐기며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키웁니다.
- 7) 아들이 친절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 8) 수줍어하고 침묵을 지키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여성이 되지 않도록 일깨워줍니다.

## 다. 양성평등에 관한 고정관념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자는 직업상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높은 데까지 승진해야 한다.</li> <li>• 남자가 그런 것 가지고 토라지고 왜 이렇게 속이 좁아?</li> <li>• 남자는 절대로 울면 안 돼.</li> <li>• 남자아이가 그것도 못하고 계집애처럼 울고</li> <li>• 사내 녀석이 부엌엔 왜 들어와?</li> </ul>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자는 얌전하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li> <li>• 여자는 인물만 있으면 공부는 좀 못해도 상관없다.</li> <li>• 여자가 선머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설쳐?</li> <li>• 너무 똑똑하고 건방져서 시집가기 어렵겠어</li> <li>• 여자애가 칠칠치 못하게</li> </ul>

#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차이는 존중하고, 차별은 반대하기 -

##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알고 계시나요?

### ▷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 ①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 2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 4. 11 시행)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 ○ 차별금지대상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제18조)

장애인(보조견,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시설물 접근 및 이용을 금지·거부해서는 안 되며, 시설물의 접근 및 이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연수

### 1) 연령별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 나) 아동 및 청소년(만6세~19세)

##### (1) 과의존 예방 단계별 가이드라인

<p>단계 1 (R :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기의 신체·정신건강, 사회성 발달 그리고 안전에도 해롭습니다.</li> <li>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모든 연령 중 청소년(만10~19세)이 가장 높습니다.</li> </ul>
<p>단계 2 (E : 스마트폰 사용 상태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자와 아이 모두 평소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활용해 사용습관을 확인해 보세요.</li> <li>스마트폰 과의존 점검방법 : 스마트쉽센터 홈페이지(<a href="http://www.iapc.or.kr">www.iapc.or.kr</a>) → 「과의존 진단」 또는 과의존이란? → 「청소년 및 성인용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이용</li> </ul> </li> </ul>
<p>단계 3 (S : 바른 스마트폰 사용 실천방안 및 대안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폰 하느라 수면 부족? 아이가 잠들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찾아 주세요.</li> <li>아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해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li> <li>아이가 스마트폰을 선용하고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li> <li>아이의 스마트폰 이용문화를 이해하고 온라인 활동에 참여, 공유해 보세요.</li> <li>아이에게 다양한 여가·사회 활동을 권장하고 함께 해주세요.</li> </ul>
<p>단계 4 (T : 주변 사람과의 관계 형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아이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의 발달단계에 따라 보호자-아이 간의 관계 양상도 변해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li> <li>기술 간섭(technoference)으로부터 가족 관계를 보호해 주세요.</li> </ul> </li> <li>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례화(ritual)하고, 공감을 토대로 소통해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 또는 자신이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라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권합니다.</li> </ul> </li> <li>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가 필요합니다.</li> </ul> </li> </ul>

(2) 청소년기 특징으로 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발생 원인

강한 흥분과 보상을 주는 활동, 높은 강도·자극의 활동을 선호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특성과 욕구가 스마트폰의 즉시성, 휴대성, 범용성 등의 특징과 맞물려 과도한 사용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주로 오락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체 선택의 동기 측면에서 과의존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전두엽이 왕성한 가지치기를 하면서 필요 없는 신경회로를 제거하는 '시냅스 가지치기(synaptic pruning)'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감정적 자극에 예민해지고, 충동적·감정적 행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기에는 타인의 관심이 자신에게로 향한다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인지적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기에는 SNS 댓글, 모바일 메신저 대화 등의 온라인 활동 중 다른 사람의 반응에 더 예민해지거나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스마트폰 과의존의 부정적 결과

(가) 수면

밤 10시 이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청색광(블루라이트)으로 인해 사용자의 신체는 각성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수면 장애, 불면증, 수면 무호흡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과 장애가 지속되면 신체·정서적 발달과 학습 및 학교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심리·정서 발달

청소년 패널조사 결과, 부정적인 외부환경과 심리 정서적 발달 특성,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적 특성이 장기간(5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자기통제감의 발달을 저해하고 그 결과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SNS에서 자신의 모습을 행복한 것처럼 포장하거나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페이스북인(인스타그램) 우울」 온라인상에서 난무하는 욕설이나 비속어, 공격적인 표현들은 이용자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 청소년의 기본 심리욕구 중 자율성과 유능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낮고,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율성의 발달을 돕고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을 낮춥니다.

(다) 학업 및 일상생활

학업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오락을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과 함께 학업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제한할수록 오락 목적의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하고, 이용하는 앱의 수를 제한할수록 정보 목적의 이용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할수록(참여형 부모 증재) 커뮤니케이션 목적의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하고, 이용하는 앱을 추천할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지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 대인관계

일상에서 가족 간에 대화와 자기표현의 기회가 줄어들수록 스마트폰을 통한 소통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또래 집단에 의한 압박이 커져 온라인상 대화 또는 활동에 대해서 의무감을 느끼며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거나 충동성이 높고 외로움·불안·우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수록 현실로부터의 탈출구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에 집중하느라 현실 공간에서 함께 있는 가족, 친구들과의 직접적 대화에 소홀해지는 현상인 디지털격리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 안전

사고, 사건, 자연재해 또는 부정적인 대인관계로 인한 심리·신체적 외상 또한 과의존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사이버 폭력, 온라인 범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부모와의 긍정적 애착관계는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자녀가 외상을 경험하더라도 외상 후 성장을 이끌고 학교생활 적응에도 도움을 줍니다.

(바) 신체발달

'VDT(Visual Display Terminal) 증후군'이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안구, 근골격계, 신경계 등의 이상 증상을 의미합니다. 옆드리거나 고개를 숙여서 혹은 손목이 꺾인 상태를 지속하는 등과 같이 잘못된 습관과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4) 스마트폰 사용 지도, 이렇게 해주세요.

사용 시간은 가족과 함께 결정하며, 반드시 자녀 스스로 끌 수 있도록 합니다.

스스로 사용을 조절하기 어려울 경우, 시간관리 소프트웨어(인터넷) 또는 어플(스마트폰)을 설치합니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외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취미를 즐깁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을 자제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식사시간, 잠들기 직전 등 사용을 자제할 시간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자녀의 학교생활과 친구관계, 최근에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는 무엇인지 등 자녀의 마음 상태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녀 생활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모습이 큰 힘이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어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 참고하시어 학생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 2 자녀의 개인정보 지키기 행동습관(부모)

- 웹사이트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또 제3자에게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 어느 웹사이트에 자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허락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세요.
- 어느 웹사이트에 자녀의 개인정보를 제2자와 공유하는 것을 허락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세요.
- 자녀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요구하세요.
-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또한 당신 자녀의 개인정보가 삭제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 3 안전한 메신저 사용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①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를 통해 확인하기

- : 메신저를 통해 금전 송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해당 본인임을 전화를 통해 확인한다.(특히, 전화할 수 없는 상황 등 본인 확인을 피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만약, 금전을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이체한 은행의 콜 센터를 통해 은행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②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기

: ID, 주민번호, 계좌, 신용카드번호 등 중요한 신상정보는 절대로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지 않는다. 필요할 경우 명의도용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실명인증 등의 시도 시 즉각 확인하고, 차단한다.

③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 관리하기

: 메신저를 이용하는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 및 본인의 개인정보와 연관성이 없도록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한다.

④ 공공장소에서는 메신저 사용을 자제하기

: PC방 등 공공장소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다양한 웹사이트에 접속·이용하기 때문에 악성코드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위험성이 높으므로 메신저 등 인터넷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 한다.

⑤ 메신저 자체 보안 설정 및 보안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기

: 메일·메신저를 통해 보내진 출처를 알 수 없는 URL 접속하거나 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 하지 않고, 유사시 사전에 바이러스 등을 차단·치료 할 수 있도록 보안 업데이트를 항상 최신상태로 유지한다.

※ 메신저 보안 설정 방법 : 메신저 상 환경설정 또는 옵션의 보안 메뉴 이용

## 학부모 안전교육

### □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임(전체 사고중)

\*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비중): ' 14년 27,381건(40.8%) → ' 15년 25,152건(37.0%) → ' 16년 22,545건(32.7%)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사고 비중은 총 인구 대비 어린이 인구비중(13.7%)이나 미국의 어린이 사고비중(27.3%)에 비해서도 높음.

#### [ 발달단계별 주요 위해품목 현황 ]

순위	1	2	3
유아기	바닥재 (10.9%)	놀이터 시설(8.9%)	침실가구(7.6%)
취학기(14세 미만)	자전거 (10.6%)	놀이터 시설(10.0%)	바닥재(5.4%)

###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최근 5년간 2,052건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고건수	2502	541	480	479	435	567
사상자수	2650	566	518	495	476	595
사망자수	33	8	8	8	3	6
부상자수	2617	558	510	487	473	589

### □ '남아' 가 '여아' 의 1.6배에 이르고, '걸음마기' 에 안전사고 가장 많이 발생

○ 지난 3년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중 성별은 '남아' 가 61.6%으로 '여아' 38.4%의 1.6배

#### □ 어린이 발달단계별 행동특성

○ 유아기(만 4세~6세)

신체 움직임이 더욱 안정되어 운동능력이 향상되고 활동범위가 넓어지지만 어린이는 위험상황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므로 보호자는 어린이가 혼자서 위험한 상황이나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함.

○ 취학기(만 7세~14세)

뼈와 근육의 발달로 운동능력이 발달하고, 보다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해짐.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논리적 사고를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안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 (발생장소) 사고다발장소 1위는 ‘주택’ 으로 약 70% 차지

○ 사고발생장소는 ‘주택’ 이 전체의 69.7%에 이르는 52,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 4,899건(6.5%), ‘교육시설’ 4,689건(6.2%), ‘도로 및 인도’ 2,972건(4.0%) 등이었음.

[ 상위 4개 사고다발장소 ]

장소(대분류)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주택	18,745 (68.5)	17,763 (70.6)	15,836 (70.2)	52,344 (69.7)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	2,243 (8.2)	1,479 (5.9)	1,177 (5.2)	4,899 (6.5)
교육시설	2,099 (7.7)	1,433 (5.7)	1,157 (5.1)	4,689 (6.2)
도로 및 인도	958 (3.5)	1,146 (4.6)	868 (3.9)	2,972 (4.0)

□ (발생장소) 연령 낮을수록 ‘주택’, 높을수록 ‘실외’ 가 큰 비중

○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 ‘교육시설’, ‘스포츠/레저시설’ 등 실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비율이 증가함.

[ 발달단계별 주요 사고발생장소 ]

구분	영아기 (1세 미만)	걸음마기 (1~3세)	유아기 (4~6세)	취학기 (7~14세)
주택	6,212 (91.6)	30,071 (80.4)	9,955 (61.3)	6,106 (41.7)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	34 (0.5)	1,434 (3.8)	1,701 (10.5)	1,730 (11.8)
교육시설	13 (0.2)	1,267 (3.4)	1,280 (7.9)	2,129 (14.6)
스포츠/레저시설	4 (0.1)	150 (0.4)	374 (2.3)	1,011 (6.9)

□ (위해품목) ‘유아기’ 에 ‘바닥재’, ‘취학기’ 에 ‘자전거’ 의 비중 높아

[ 발달단계별 주요 위해품목 현황 ]

순위	유아기	취학기
1	바닥재 (10.9%)	자전거 (10.6%)
2	놀이터 시설 (8.9%)	놀이터 시설 (10.0%)
3	침실가구 (7.6%)	바닥재 (5.4%)
4	문 (6.0%)	축구공, 야구공 등 운동장비 (5.2%)
5	완구 (5.4%)	문 (4.6%)

□ (사고유형) 연령대 높아질수록 ‘미끄러짐·넘어짐

[ 발달단계별 주요 사고유형 ]

순위	유아기	취학기
1	미끄러짐·넘어짐 (30.4%)	미끄러짐·넘어짐 (32.9%)
2	부딪힘 (24.7%)	부딪힘 (18.4%)
3	추락 (16.0%)	추락 (11.2%)
4	눌림·끼임 (8.6%)	베임·찢림 (8.6%)
5	이물질 삼킴/흡인 (6.4%)	실외활동 중 충돌추돌 6.7%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법

### 이물질 삼킴사고 발생시 (+)

- 담배, 의약품, 단추형 건전지 등을 삼켰을 때 억지로 구토시키지 않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며, 의사에게 언제, 무엇을, 얼마만큼 삼켰는지 알립니다.

#### 이물질 삼켜 목에 걸렸을 때



돌까지의 영유아  
등 두드리기



돌 이후의 영유아  
등 두드리기



소아  
복부 밀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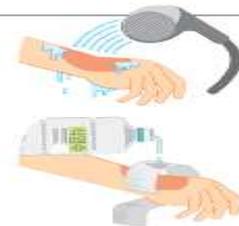
- 돌까지의 영유아는 영아를 한쪽 팔에 업드린 자세로 코와 입을 가리지 않게 손바닥에 얼굴을 올려놓습니다.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한 후 5회의 등 두드리기와 바로 눕혀 2, 3번째 손가락으로 5회 가슴 밀어내기 방법을 이물질 나올 때까지 교대로 반복 시행합니다.
- 돌 이후의 아이는 한쪽 무릎을 세워 허벅지에 업드리게 한 후 아동의 명치를 압박해 등의 가운데를 손바닥으로 두드립니다.
- 소아의 경우 뒤에서 양팔을 둘러 명치 아래에, 한쪽 손은 주먹을 쥐어 소아의 복부를 위쪽을 향해 압박합니다.

### 화상사고 발생시 (+)

- 곧바로 15분-30분 정도 물을 뿌리고 물집이 생겨도 터뜨리지 않습니다.
- 이후 화상 부위를 깨끗이 씻고 깨끗한 거즈를 깨끗한 물이나 식염수에 적셔 덮어줍니다.

#### < 주의사항 >

- 저온화상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 화상 부위에 얼음이나 냉각시트가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화상 범위가 광범위할 경우 구급차를 부르거나 바로 병원에서 진찰합니다.



### 출혈 및 타박상 발생시 (+)

- 출혈** 상처 처치에는 지혈이 중요합니다. 상처 부위를 씻은 후 상처의 깊이와 크기를 확인하고 지혈합니다.
- 타박상** 팔이나 다리 등을 부딪힌 경우에는 타박상 부위를 냉찜질합니다. 배를 부딪힌 경우에는 옷을 헐겁게 하고 안정을 취하며 병원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 심폐소생법(의식이 없고 호흡이 정지된 경우) (+)



#### 영유아

좌우 유두를 이은 선의 중앙부에서 살짝 아래쪽을 손가락 2개로 가슴이 3분의 1 정도(4cm) 내려앉는 강도로 압박합니다. 이때 매 30번 압박할 때마다 코와 입을 덮고 3~5초간 2회 숨을 불어 줍니다.



#### 소아

흉부의 아래쪽 절반 부분에 한 손을 대고 가슴의 두께가 3분의 1 정도(5cm) 내려앉는 강도로 압박합니다. 가슴압박과 숨을 불어주는 비율은 모든 소아에서 30번 압박할 때마다 2회 숨 불어주기의 비율(30:2)로 하고, 압박 빈도는 1분에 100~120회입니다.



## 어린이 안전사고 주요유형 및 예방법

### 지진



2015년 이전 연간 50회 남짓 발생했던 국내 지진은 2016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 예방법



- 1 높은 곳에 깨지기 쉽거나 무거운 물건을 두지 마세요.
- 2 전열기, 가스기구는 단단히 고정합니다.
- 3 집주변 대피장소를 미리 알아둡니다.

### 태풍



한 해 3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 예방법



- 1 태풍이 불 때 외출을 자제해 주세요.
- 2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세요.

## 교통안전

### 보행자 안전사고



교통사고는 보행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 교통사고가 증가합니다.

#### + 예방법



- 1 길을 건너기 전에는 신호와 상관없이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 2 비 오는 날에는 밝은 색의 옷을 입고, 투명 우산을 쓰도록 유도해 주세요.

### 안전띠 미착용 안전사고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미착용 한 경우 피해가 집중되며, 머리를 다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 + 예방법



- 1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 인성교육

인성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삶에 녹아나는 공간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성은 학생이 성장함에 따라 인감됨을 갖춰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인성교육은 생활에 가까운 단계에서 심오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접근 방향은 다양합니다. 가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기본적인 인성교육은 가족 구성원들과의 ‘대화’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경험 가운데 학생의 인성을 만져줄 수 있다면 학생에게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다음과 같이 학생과의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1 밥상 머리 인성교육이 중요한 이유

#### 1. 스마트폰과 TV보기가 아닌 ‘대화’를 하는 시간

밥상머리교육을 위해선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TV를 보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죠. 부모님이 먼저 아이에게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면 대화가 활발해지고, 가족 간의 두터운 친밀감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빨라지는 언어 습득 능력

미국 하버드대 캐서린 스노 박사 연구팀이 3세 자녀를 둔 83개 가정을 대상으로 2년간 아이들의 언어습득 능력을 연구한 결과, 연구 기간 동안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습득한 어휘는 2,000여 개였으며, 그중 가족 식사 중 배운 단어가 1,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 2 밥상 머리 교육 과정

- ▶ 1단계: 건강한 영양식단 준비하기(요리의 재료, 영양소)
- ▶ 2단계: 재료준비하며 생활의 지혜 배우기(재료 고르는 법)
- ▶ 3단계: 함께 요리하며 친밀감 높이기(요리하며 칭찬, 지지와 스킨십)
- ▶ 4단계: 완성요리 맛보며 예절과 사회성 길러주기(식사규칙과 예절)

한 상에 둘러앉아 가족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부와 많은 전문가들의 지침에 따라, 식사 시 핸드폰이나 TV 사용을 줄이고, 한 달에 2번 이상은 가족이 함께 요리를 하는 등 ‘우리 가족만의 밥상규칙’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예절도 가르치고, 가족 간의 대화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학생봉사활동

### ○ 학생 봉사활동이란?

자원봉사활동의 기준인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을 충족하는 활동으로, 친구 돕기 . 환경정화활동 . 캠페인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은?

학생 봉사활동은 경기도교육청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 해당 운영 계획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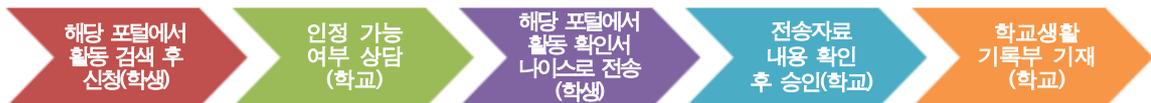
### ○ 학생 봉사활동 인정 시간은?

구 분	평일(4교시)	평일(6교시)	휴업일(토, 공휴일)
최대 인정시간	4시간	2시간	8시간

- 최대 인정시간 내에서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시간 단위(분 단위 절사)로 인정합니다.
- \* 현장체험학습 등의 출석 인정 결석기간에 실시한 날에 봉사활동을 한 경우 해당 일 수업시간 제하고 인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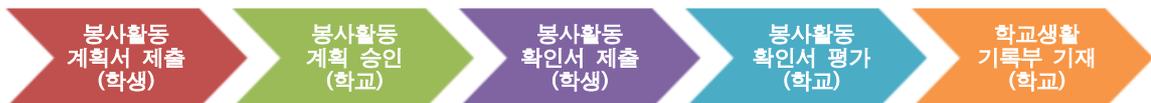
###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제출은 필요 없으나, 활동 실시 전 담임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까지 완료했을 때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 활동 실시 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는, 학부모님의 자녀 아이디·비밀번호 확인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안내 가능)

(※봉사활동 양식은 학교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안내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 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격리 해제할 때까지(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원·격리 통지서</li> <li>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세지</li> <li>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li> </ul>
<b>PCR 검사자</b>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진단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R 음성 확인서</li> <li>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li> </ul>
<b>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b>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안내(제9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의사소견서 삭제)	[신속항원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li> <li>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li> </ul>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예: 병원진료 결과)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코로나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 방안】

	접종일	접종 후 1~2일	접종 후 3일~
<b>출결</b>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결석, 지각, 조퇴, 결과)
<b>평가</b>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석'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b>증빙 자료</b>	예방정접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처리 가능